2026년도 제10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6. 4. 14. 화요일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김성주(분과위원장), 손수호, 안효질, 유재규, 최태경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6-100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박현주 전문위원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053건(안건번호 제2026-39382호~41434호)

- 회의결과: 제2026-39382호~39384호(순번 1~3번)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캐릭터 이미지를 무단 이용해 제작한 실물 제품을 판매 중인 사안으로, 제품의 제작 경위 및 유통 방식 등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칙적으로는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이는 점, 이에 향후 동종 심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안건번호 제2026-39385호~39391호(순번 4~10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PDF 파일 거래를 위한 글을 게시한 사안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전송하고 있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6-39392호~39393호(순번 11~12번)는 저작권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는데 사용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6-39394호~39396호(순번 13~15번)는 블로그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하고 있는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그 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안건번호 제2026-39397호~41434호(순번 16번 이하)는 모두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다만 위 사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김성주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 제10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6-10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 여부 결정

- 김성주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 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의견 없음.

- 박현주 전문위원: 저작물명이나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 등은 비식별 처리하도록 하겠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김성주 분과위원장: 위원 모두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민원 정보 및 저작물명과 관련한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심의

안건에 관한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쪽수를 기재하고 비공개로 결정함.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박현주 전문위원: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 등임.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김성주 분과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람.

- 박현주 전문위원: 금일 심의 안건은 37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4,226개의 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로 총 2,053건의 안건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번 내지 3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온라인쇼핑몰에 캐릭터 이미지를 이용한 상품을 판매 중인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 위원님들

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심의대상 게시물을 통하여 판매되는 상품은 권리자의 상업적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 또는 2차적저작물로 변형 및 작성하여 이용 중인 사실이 인정됨. 그동안 우리 심의위원회는 권리자의 침해 여부 소명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불법복제물등을 판매하는 게시물에 대한 판단 또는 시정권고 여부를 확정하는 것을 보류하기도 하였으나, 본 사안의 경우 권리자의 무단이용 여부 확인이 이루어져 적어도 판매 대상 물품의 불법복제 여부는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음. 불법복제물의 급격한 확산을 방지하는 시정권고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캐릭터 불법복제물을 포함한 물품이 온라인에 상당수 존재하는 점 등을 미루어보면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는 점, 원저작물의 잠재적인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바탕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고 및 제2호에 따른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위 사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대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동조 제1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순번 1번 내지 3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 중, ‘진정품에 있어야 할 표시’가 어떠한 것인지 질의함.

- 박현주 전문위원: 해당 표시가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는 추후 확인이 필요함.

- B 위원: 감정서의 발급 주체에 대하여 질의함.

- C 위원: 발급 주체는 ■■■■■■인 것으로 보임.

- 박현주 전문위원: 법원에서 요구하는 형태의 감정서는 아니며, 의견서에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음.

- A 위원: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등 병행수입 제품일 가능성도 있으며, 권리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들의 판매 페이지를 보면 수입 제품, 직구, 해외 직구 등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음.

- D 위원: ■■■■■■가 감정기관은 아니지만, 당사의 상표권을 허락받지 않고 제작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임.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고 상품을 제작 또는 판매하는 경우 충분히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됨.

- A 위원: 본 사안이 중국에서 다른 라이선스를 통하여 제작한 상품을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라면 권리관계에 따라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C 위원: ▣▣▣ 자체의 제품 유통 과정에서의 진정품에 대한 표기는 통일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유사한 사안에 대한 지난 심의 결과의 후속조치 여부를 질의함.

- 박현주 전문위원: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현재 판매 금지된 상품으로 상태가 변경되어 있음.

- A 위원: 덧붙이자면 이러한 사안은 저작권보다는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C 위원: 상표권 문제에 가까운 사안이기는 하지만,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정보가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시정권고 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박현주 전문위원: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법적 쟁점들을 전체 위원분들께 공유하고, 향후 심의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있음.

- B 위원: 동의함. 일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전체위원회 차원에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C 위원: 전체위원회 심의 전, 가능하다면 감정서에 기재된 '진정품에 있어야 할 표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 외에 본사 또는 중국 법인을 통해 병행수입의 가능성이 있는지 등 다른 경로

의 유통 가능성을 확인해 주시면 심의에 도움이 될 것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추가 질의 또는 의견이 없으시다면 순번 1번 내지 3번을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전체위원회 회부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 내지 3번은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4번 내지 10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 출판물의 PDF 파일 거래를 위한 글을 게시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순번 4번 내지 10번은 판매 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고 및 제2호에 따른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위 사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을 경우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대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동조 제1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순번 4번 내지 10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번 내지 10번은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1번 내지 12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쇼핑 플랫폼에서 불법 스트리밍용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순번 11번 내지 12번은 기기의 제작자 또는 구매자의 저작권 등 침해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고 및 제2호에 따른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위 사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대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동조 제1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순번 11번 내지 12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1번 내지 12번은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3번 내지 15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블로그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하고 있는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순번 13번 내지 15번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송하고 있는 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고 및 제2호에 따른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위 사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대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동조 제1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순번 13번 내지 15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3번 내지 15번은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6번 이하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브리저튼 시즌4’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517번(‘브리저튼 시즌4’)은 2026년 1월에 공개되어 넷플릭스에서 서비스 중인 해외 드라마로 웹하드에서 1개 화를 560포인트에 판매 중임.
(‘영 셜록’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006번(‘영 셜록’)은 2026년 3월에 공개되어 프라임비디오에서 서비스 중인 해외 드라마로 웹하드에서 8개 화를 510포인트에 판매 중임.
(‘크라임 10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470번(‘크라임 101’)은 2026년 4월에 개봉하여 4월 14일 기준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320포인트에 판매 중임.
순번 16번 내지 2053번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

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성주 분과위원장: 순번 16번 이하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이므로 가결에 동의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6번 내지 2053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6-39382호~39384호(순번 1번~3번)는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안건번호 제2026-39385호~39391호(순번 4번~10번),
제2026-39392호~39393호(순번 11번~12번), 제2026-39394호~39396호(순번 13번~15번), 제2026-39397호~41434호(순번 16번~2053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o 김성주 분과위원장이 제10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6년 제10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4. 21.

분과위원장 김성주

위원 손수호

위원 안효질

위원 유재규

위원 최태경